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광주지방검찰청

### 보도자료

2021. 2. 4.(목)

전문공보관 이진호

전화 062-231-4330 / 팩스 0502-193-7661

### 제 목 모든 사건에 대한 검사 직접 면담·조사제도 시행

-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 여환섭)은 인권보호와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하여 모든 사건에 대해 검사가 직접 면담·조사하는 제도를 시행함
- 광주지검은 그밖에도 소통형 의사결정 시스템 도입, 공판준비형 검사실로 형사부 재판, 조서 작성 폐지, 영장의 실질적 심사 강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인권보호기관으로서 책무를 완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1 시행 배경

- 실무상 다수의 형사사건에 대해 송치 후 검찰에서 별도 소환 조사 없이 처분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사건관계인들은 충분한 진술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게 되어 검사가 경찰 서류만 보고 처분을 결정하는 것이라는 오해가 발생하고, 검찰 처분에 대한 불신의 원인으로 작용
- 처분의 구체적 타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검사의 책무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사건관계인들에게 진술과 의견 개진의 기회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검사의 직접 면담·조사 필요

## 2

## 구체적 내용 및 기대 효과

### 가. 모든 사건에 대한 검사 직접 면담·조사

- 원칙적으로 모든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직접 사건관계인을 면담·조사하여 생생한 진술을 직접 청취하고, 물적 증거를 확인함으로써 기소여부 결정 및 합리적 양형판단에 필요한 충분한 심증 형성
- 검사 뿐 아니라 검사직무대리의 약식명령 사건에 대해서도 벌금액 결정 등 양형 판단을 위해 사건관계인 직접 면담·조사 원칙

### 나. 면담·조사 방식

- 면담·조사 시 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진술증거는 법정에서 직접 신문하여 현출하며, 필요 시 영상녹화 및 음성녹음 활용
  - ※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여 소환 대신 화상 또는 전화녹음 방식도 가능
- 참여 수사관은 사건관계인에 대한 출석요구 사실, 면담·조사 방식 및 시간, 면담·조사 상황 등을 기재하여 수사기록에 첨부함으로써 절차적 투명성 확보

### 다. 기대 효과

- 사건관계인이 직접 검사에게 진술할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검찰의 사건 처분 결과 및 과정에 대한 국민의 공감과 신뢰 회복
- 조서 작성을 병행하지 않으므로 사건관계인의 진술에 집중할 수 있고, 조서 작성·열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며 조서 작성·열람 소요 시간을 생략할 수 있어 신속한 사건 처분 가능

### 가. 「소통형 의사결정 시스템」 도입

#### ○ 도입 배경

- 검사가 사실상 단독으로 수사하고 결정한 다음 상급자에게 최종 결정문을 제출함으로써 결재받는 종래 업무관행은 사건의 장기방치를 초래하거나, 부적정한 수사방식을 사전에 통제하기 어려운 측면 존재
- 저호봉 검사에 대한 상급자의 단계별 지도·교육이 곤란하고, 상·하급자 간 불필요한 오해와 의견충돌이 외부로 공개되어 검찰 처분의 정확성·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초래되는 사례도 발생

#### ○ 개선방안

- 형사부의 사건 배당·수사·결재절차 전반을 개편하여, 배당 즉시 주임 검사가 부장검사와 함께 수사계획을 수립하고 수시로 상의하여 최종 처분 방향을 결정하는 「소통형 의사결정 시스템」 시행('20. 11.)

#### ○ 구체적 내용

- 배당 단계 : 부장검사와 주임검사가 1차 검토의견 상의
- 수사 단계 : ①주임검사의 수사계획 보고 ▶ ②영장청구·소환조사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수사에 대한 사전 보고 ▶ ③영장집행·소환조사 등 종료 후 결과 보고 ▶ ④수시로 수사방향과 처리계획 상의
- 결정 전 합의 단계 : 최종 결정 전 부장검사와 구두 합의

※ 합의는 구두로 하고 합의 과정은 비공개(법원 합의부의 의사결정 방식과 유사)

## 나. 「공판준비형 검사실」로 형사부 재판

- 수사·공판환경 변화 방향에 맞추어 검찰 업무의 중심을 ‘공판 준비 업무’로 바꾸고 공소유지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프로세스를 개편하여, 검사는 직접 사건관계인을 면담하여 입증계획서, 증인신문 사항 등 공판에서 직접 활용 가능한 자료 작성
  - 수사관은 「공판지원팀」으로 재편성하여 기록관리·증거수집·분석 등 물증 확보와 공판지원업무 전담
- 종래 검사·수사관·실무관이 1개의 검사실에서 함께 근무하였으나, 새로운 업무 프로세스에 적합하도록 별도 공간에서 근무하는 ‘공판 준비형 검사실’로 구조 변경(‘20. 10.)

※ 사건관계인 면담·조사는 영상녹화조사실 등 별도 조사실에서 검사·수사관이 함께 진행

## 다. 조서 작성 폐지

- 종래 조서에 의존하는 수사는 자백·진술강요, 심야조사 등 인권침해 논란이 계속되어 왔고, 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손쉽게 영상녹화·녹음 조사를 할 수 있으므로 조서 없는 수사로 방향 전환

※ 진술증거는 법정에서 직접 신문하여 현출함으로써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인 직접주의·공판중심주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결국에는 진술에 의존하지 않는 물증확보 위주의 수사 시스템 정착

## 라. 영장에 대한 실질적 심사 강화

- 종래 사경이 신청한 영장에 대해 검사는 수사기록만으로 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하였으나, 담당 경찰관의 의견을 듣고 사건관계인을 면담하는 등 직접 혐의 소명 여부 및 영장 필요성 유무를 확인하여 인권침해 원천적 방지(‘20. 10.)